

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의안 번호	68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 3. 14.
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제정이유

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시·군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 되여 군수가 부과 징수한 과징금액의 100분의 60을 시·군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 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의 근거 마련(안 제2조).
- 나. 기금의 사용용도를 정함(안 제3조).
- 다.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한 회계규정(안 제4조).
- 라. 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(안 제5조 및 제7조).
- 마. 기금의 운용계획서 승인 및 결산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.

3. 제정조례(안) : 별첨

4. 근거법령 :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, 제43조

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성군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
2.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
3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
2.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3.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
4. 위해식품 등 신고보상금
5.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
6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

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②여유자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.

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부군수를 기금운용관으로, 위생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.

④기금의 출납은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조(기금심의위원회)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.

1. 보건소장

2.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

④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의 실비보상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
2. 기금의 조성·적립·운용 및 결산
3.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기금운용계획·결산보고)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출납폐쇄 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